#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465

발의연월일: 2022. 7. 14.

발 의 자: 장철민·김윤덕·조승래

안호영 · 강훈식 · 소병철

김종민 • 이정문 • 변재일

송재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혁신도시, 도심융합특구, 기업도시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거점 활성화 정책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이에 현행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감면을 해주는 등의 지방거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이어지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올해 12월 31일 일몰도래할 예정임. 국가균형발전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고 지방거점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수도권 밖 공장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앞으로도계속 유지되어 이전에 대한 유인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밖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일몰연장 하고자 함(안제63조제1항).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 24년 12월 31일"로,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
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u> 등</u> ) ①
모두 갖춘 내국인(이하 이 조	
에서 "공장이전기업"이라 한다)	
이 공장을 이전하여 <u>2022년 12</u>	<u>2024년 12</u>
월 31일(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월 31일
로서 공장의 부지를 <u>2022년 12</u>	<u>2024년 12</u>
<u>월 31일</u> 까지 보유하고 <u>2022년</u>	<u>월 31일2024년</u>
<u>12월 31일</u> 이 속하는 과세연도	<u>12월 31일</u>
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	
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u>2025년 12월 31일</u> )까지 사업을	2027년 12월 31일
개시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공장	
이전기업이 이전 후 합병·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	
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2	
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다만,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	

설업,	소비	성서	비스업	, 두	L점포	-
판매약	법 및	해운	-중개업	을	경영	
하는	내국인	인인	경우어	는	그러	
하지	아니히	다.				

- 1. 2. (생 략)
- ② ~ ⑨ (생 략)

•	

- 1.・2. (현행과 같음)
- ② ~ ⑨ (현행과 같음)